

이 사 회 회 의 록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2023년 1월 10일(화) 11:00
2. 장 소: 관리동 2층 회의실
3. 참석이사: 이재현, 김기유, 조진환, 임형준,
 김오영, 박범수, 박기혁
4. 불참이사: 없음
5. 안 건

회의소집통보일자: 2023. 1. 2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 ① 1호의안: 법인정관 변경의 건
- ② 2호의안: 2023학년도 교장·교감 임용 및 자격연수 추천의 건
- ③ 3호의안: 2023학년도 신임교사 임용(자체선발)의 건

이사장 이재현 :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본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11:00)
부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호의안인 법인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의안: 법인정관 변경의 건]

국장 신동진: 1호의안인 법인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법인정관 변경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정관 정비 요청 지침에 의거 사립학교법 및 교육청 지침에 맞게 조항 및 구 용어, 오탏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은 첫째, 도로명 주소 번지 뒤에 법정동을 기재하고 둘째, 기간제교원 임용의 정년퇴직 교원의 임용 조항을 삭제하고 셋째, 사무직원 임용 제한 자격의 사무직원을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심의기구이지만,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서류제출 요구,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시행, 소위원회 설치는 자문사항이므로 심의에서 심의 또는 자문으로 수정하고 그 외 조문 제목과 구용어, 오탏 등의 변경입니다. 이상 법인정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재현: 이사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첨부된 자료의 정관변경안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법인실정에 맞도록 교육청 지침의 표준안을 적용하여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사 :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동의합니다.

이사 : 동의합니다.

이사 : 동의합니다.

이사 일 동: 전원 동의하다.

이사장 이재현: 1호의안은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호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호의안: 2023학년도 교장·교감 임용 및 자격연수 추천의 건]

국장 신동진: 2호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화여자중학교 심윤섭 교장은 2023.2.28. 일자로 초임 교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에 따라 교장 후보자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교감 후보자의 프로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중임 여부와 그에 따른 교감 임용 및 자격연수 신청에 대해 이사님들께서는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재현: 배부해 드린 프로필을 검토하신 후 이사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우선 교장 후보자 대상자의 프로필을 검토한 바, 현재 세화여자중학교 심윤섭 교장은 학식이나 덕망, 교무행정과 학생지도에 교장으로서 적임자라 판단되어 2023.3.1. 일자로 4년간 중임으로 임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사 : 동의합니다.

이사 일 동: 전원 동의하다.

이사 : 또한, 교장 임용 의결에 따라 교감 임용에 대해 제안합니다. 법인 내 3개교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활성화 제고 및 안정화,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교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2023.3.1. 일자로 세화고 오삼찬 교감을 세화여자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하고 세화고 공석인 교감에 세화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상용 교무기획부장이 학식과 덕망, 학교의 다년간의 행정부장을 역임하였기에 세화고등학교 교감으로 적임자라 판단되어 1.20일까지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며 교감자격증 취득 후 즉시 세화고등학교 교감으로 임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사 : 동의합니다.

이사 일 동: 전원 동의하다.

이사장 이재현: 2호의안은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호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호의안 : 2023학년도 신임교사 임용(자체선발)의 건]

국장 신동진: 3호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신임교사 공개채용에 따라 세화여자고등학교 총 6명의 신임교사를 임용하고자 제정합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교원 수급에 따라 국어, 윤리, 물리, 미술, 전문상담, 보건 6과목에서 각 1명씩 총 6명의 신임교사를 채용하고자 공개채용을 실시한 결과 과목별 1명씩 총 6명의 교사를 채용하고자 제정합니다. 6명의 신임교사는 필기시험과 수업실연, 학교면접에서 우수하고 실력있는 교사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화여자중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꼭 필요한 교사라 인정되어 2023.3.1.일자로 임용할 것을 제정합니다.

이사장 이재현: 이사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학교 운영 및 교원 수급에 대한 계획은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고받은 6명의 교사는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정대로 세화여자고등학교 총 6명의 신임교사를 2023.3.1.일자로 임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사 : 동의합니다.

이사 일동: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 이재현: 3호의안은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문사항이나 기타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장 이재현: 금일 법인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은 김오영 이사, 박범수 이사, 박기혁 이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12:30)

<첨부> 1. 신구대조표 1부

2. 신임교사 제정자 명단 1부

상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다.

2023년 1월 10일

이 사 장

이 재

현

이사장이재현

이 사

김 기

유

이사김기유

이 사

조 진

환

이사조진환

이 사

임 형

준

이사임형준

이 사

김 오

영

이사김오영

이 사

박 범

수

이사박범수

이 사

박 기

혁

이사박기혁

<첨부> 1. 신구대조표

| 현행(舊) | 변경(案) | 비고 |
|---|---|----|
|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에 둔다. |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반포동)에 둔다. | 수정 |
| 제11조(세제) 임여금의 처리) ~이하생략~ | 제11조(세계) 임여금의 처리) ~이하생략~ | 수정 |
| 제12조(회계년도) ~이하생략~ | 제12조(회계연도) ~이하생략~ | 수정 |
|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하생략~ |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하생략~ | 수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생략~ | 수정 |
| 제1관 임명 | 제1관 임용 | 수정 |
| 제34조의2(기간제교원) ~이하생략~ | 제34조의 2(기간제교원) ~이하생략~ | 수정 |
| ③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삭제 <2023.1.10.> | 삭제 |
| ~이하생략~ | ~이하생략~ | |
| 제34조의 5(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이하생략~ | 제34조의 5(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이하생략~ | |
|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 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 장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 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 장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 |
| 2. 「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 2. 「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 |
|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수정 |
| 4. 관찰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4. 관찰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
| ~이하생략~ | ~이하생략~ | |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이하생략~

⑦ 제2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40조의 1(교원의 정년) ~이하생략~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이하생략~.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6조의 2(교원의 정년) ~이하생략~

③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46조 2의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의결) ~이하생략~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범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제66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하생략~

8.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이하생략~

⑦ 제2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40조의 2(교원의 정년) ~이하생략~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이하생략~.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6조의 2(교원의 기피 등) ~이하생략~

③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의결) ~이하생략~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범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제66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하생략~

8.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 | | |
|--|--|-----------|
| <p>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하생략~</p> <p>제73조. 제75조(교장등) ~이하생략~ ② 교장은 교무를 <u>통괄</u>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p> <p>~이하생략~</p> | <p>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하생략~</p> <p>제73조. 제75조(교장등) ~이하생략~ ② 교장은 교무를 <u>총괄</u>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p> <p>~이하생략~</p> | <p>수정</p> |
| <p>제8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u>제32조 제2항</u>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생략~</p> <p>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생략~</p> | <p>제8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u>제32조 제1항</u>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생략~</p> <p>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생략~</p> | <p>수정</p> |
| <p>제85조의 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u>실의</u>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 8(회의록 작성 등) ~이하생략~</p> <p>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p> | <p>제85조의 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u>실의</u>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 8(회의록 작성 등) ~이하생략~</p> <p>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p> | <p>수정</p> |
| <p>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실의의 공정성을 ~이하생략~</p> <p>제86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실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u>실의</u>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실</p> | <p>제86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u>실의</u>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u>실의</u>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실</p> | <p>수정</p> |

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실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찰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의 2(소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안전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위원회의 실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실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의 2(소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안전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수정

부칙

2023. 1. 10. 10
10. 10. 10

<첨부> 2. 신임교사 제청자 명단

| 소속 | 과목 | 성명 | 출생년 | 출신학교 | 경력 | 자격 | 임용일자 |
|----------|------|------|-----|------|----|----------|-------------|
| 세화 여고 | 국어 | 이 지 | 19 | | | 중등 2정 | 2023 3.1 |
| | 윤리 | 양 재 | 19 | | | 중등 2정 | 2023 3.1 |
| | 물리 | 여 탁 | 19 | | | 중등 2정 | 2023 3.1 |
| | 미술 | 김 지 | 19 | | | 중등 2정 | 2023 3.1 |
| | 전문상담 | 우 림 | 19 | | | 중등 1정 | 2023 3.1 |
| | 보건 | 박 현 | 19 | | | 중등 2정 | 2023 3.1 |

2023 박현 - 신임교사